

—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(안) —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여성공무원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 증진
- 출산휴가 시 업무공백 등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대체인력 근거 마련

3. 주요내용

- 여성공무원의 출산전후를 통하여 60일간의 출산휴가를 90일간의 출산휴가로 허가
- 이 경우 20일 전에 휴가를 신청하되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기간 동안 행정업무에 경험이나 지식이 있는 자를 고용계약 하여 충원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(담당, 주무급 이상은 제외)

4. 참고사항

- 행자부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 표준안(2001.9.26)
- 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(2000.6.15)

5. 검토의견

-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 표준안에 의거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3조를 개정하는 내용임.

○ 복무조례 제23조(특별휴가)2항중 여성공무원에 대한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개정하고 이 경우 20일전에 휴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휴가기간 중 업무공백을 줄이고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고용계약에 의해 충원하는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조례안으로 부칙에 의해 11월이후 출산하는 공무원에 소급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.

○ 상위법이나 타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음.